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박 영 선
기업부장관

●법률 제1640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64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록된 해외작업장”을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요원”을 각각 “정보수집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요원”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해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6402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기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2항) 중 “의료기기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